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666호(號) 1929년(昭和 4) 3월 25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89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3월 25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목탄(木炭), 땔나무(薪: 1품적[品積])의 항(項) 다음에 아래아래[左]를 추가(追加)함.

품 목(品目)	발역(發驛)	착 역(著驛)	급 종 별(扱種別)	임 륜(賃率)	기 사(記事)
청량음료수(清涼飲料水: 과실[果實水]를 포함[包含]함)	경성(京城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소화물급(小貨物扱)	100마일(mile·哩)까지 2할(割) 5푼(分) 감(減) 101마일(mile·哩) 이상 3할(割) 5푼(分) 감(減)	본(本) 임률(賃率)은 1930(昭和 5)년 3월 31일까지 한(限)해 적용(適用)함